

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제11호 2001. 3. 20)

의회운영위원회
2001. 3. 22

1. 심사경과

- 가. 2001. 3. 20 : 김현철의원의 5인 발의
- 나. 2001. 3. 20 : 의회운영위원회 회부
- 다. 2001. 3. 22 : 제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서면)

가. 제안이유

안전심사와 관련한 질의 및 토론 의미는 각종 현안사항 및 주요관심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한 기회가 없어 본회의 개의시 한정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들의 발언기회를 확대 하고자 “5분 자유발언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개정함

나. 주요골자

-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5분자유발언을 허가함.
-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신청함.
- 5분 자유발언의 의원수와 순서는 신청순서에 의거 의장이 정함.
-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김국연)

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아울러 경남도의회 및 여타 시 지역의 의회에서도 본 규정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: 없음